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27일, 강선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선영의원)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된 사람 등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

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확인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 개정안은 확인신체검사 시 관계 기관에 요청 가능한 진료기록, 치료내역 등 자료의 종류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등 자료 제출 협조 기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절차인 확인신체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안 등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